3 (제238회 - 제4차 부록)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8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 교부제한 사유 외에 법률의 위임 없이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 신청 제한 및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안 제21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주민복지과-52646(2018. 9. 19.)〕
마. 입법예고 : 의견 없음(예고기간 : 2018. 10. 4. ~ 2018. 10. 24.)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성주군(이하 “군”라 한다)”을 “성주군”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를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로 한다.
제21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32조의2 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이하 "군"라 한다)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재정법」 제17조 ---------- 성주군----------.
제4조(보조대상 사업)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4조(보조대상 사업)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 1. ~ 4. (현행과 같음)
제21조(실적보고) ① ~ ③ (생 략)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1조(실적보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